



**2019. 2. 22(금) 14:00-17: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후원 |



여성가족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춘숙입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여성정책연구원 권인숙 원장님,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저출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보육정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11년 3만 7,934가구에서 2017년 5만 8,589 가구로 6년 사이 54.2%의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2013년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문제가 불거진 뒤 작년 6월 법원에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고, 올해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재가 자녀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등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쉬게 정해져 있지만, 영유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상 아이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마땅한 휴게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이돌보미와 같은 특수 직종의 경우 법 적용에 예외를 두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국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토대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재정비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 춘 숙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회의원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가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화에 노력하고 계신 정춘숙 의원님,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이번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사를 후원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님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이돌봄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할 사적 영역의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아이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차원의 보편적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돌봄지원 제도를 마련해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의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시행 이후 이용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만4천여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가 자녀돌봄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부모들의 장시간 근로 및 비전형 근로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포용적 복지계획을 발표하고, 아이돌봄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재가 자녀돌봄지원의 수요-공급 간 미스매칭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고민과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이돌봄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가족환경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돌봄 연구를 통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권인숙

시간	내용
14:00-14:05	사회 :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개회(국민의례, 내빈소개)
14:05-14:20	인사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영사 :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축사 :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14:20-15:20	좌장 : 김선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제 1.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2.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방안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30	휴식
15:30-16:30	토론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춘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최민영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 가나다 순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 목 차

## 발제 1

-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 1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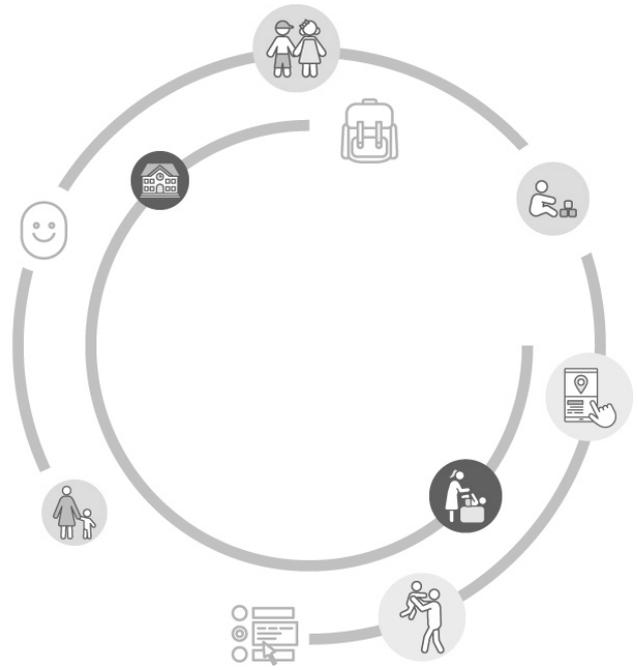
## 발제 2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방안 ..... 23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문

-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39
-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41
-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 43
- 이성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 51
- 이재춘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 59
- 최민영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61

발제 1



#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문제제기

- 보육지원 확대에도 재가 자녀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재가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왔음
  - (주중 주간시간 중심의 돌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장시간 근로 지속, 비전형 근로 확대 등으로 주중 주간 시간대 이외에 돌봄 지원 수요가 있으며 시설운영시간 연장 등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수요 존재
  -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돌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아동 및 부모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돌봄 지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심야 및 야간 시간대 돌봄 수요는 소수일 가능성이 높고, 소수의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저출산 지속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녀돌봄지원체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발전 방향 모색이 요구됨
  - 안정적인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 설계가 필요함. 특히 범국가적 육아지원정책 내에서의 정책적 위상 설정 등 돌봄체계 안에서 중장기적 재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 및 핵심 정책 대상, 효율적인 전달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대기 누적, 수요 시간의 미스매칭 등 수요 미 충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아이돌봄사업의 경우)부터 주 52시간 실시 및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됨. 이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및 일자리로서 고용안정성과 소득보장 방안 모색 필요

## II. 아이돌봄사업 운영 현황

### 1. 아이돌봄사업의 목적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사업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음(「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와 제 20조에 의함

**【아이돌봄 지원법(2016.9.3. 시행, 법률 제14064호)】**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아이돌봄사업 추진 경과<sup>1)</sup>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천안, 울산)에서 출발하여 2007년 이후 전국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됨. 연도별 핵심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07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 \*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 실시(천안, 울산)
  - 아이돌보미사업 관리기관 지정(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아이돌보미 :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사업 실시
- ('08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65개소)
- ('09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 ('10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 ('11년)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을 160시간→120시간으로 변경
- ('12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8. 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원대상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모든 취업부모 대상으로 확대
- ('13년)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신설
  - 아이돌보미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13.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13.11.)
-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만 24개월)
- ('15년)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아이돌보미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 ('16년)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기준 중위소득)

1) 여성가족부,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p16

-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만 36개월)
- ('18년) 정부지원 확대(가형~다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을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 ('19년)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을 (기존지원) 각 5%p증, (신규지원) 15~20%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 3.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2019년 사업 기준)
  - 2019년 사업 지침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시간제가 있으며 그 외 질병감염아동 지원 및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음

서비스 종류	대상	이용요금(시간당)
영아종일제	만 3개월이상 ~ 만 36개월 영아	9,650원
시간제	만 3개월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	- 일반형: 9,650원 - 종합형: 12,55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만 12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	11,580원
기관연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16,500원

- 이용 자격 및 정부 지원
  -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우선 순위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족도 우선 지원 대상임
  - 정부지원은 가형(중위소득 75%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되며 지원시간은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60시간~ 200시간이내이며 시간제는 연간 720시간 이내임.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자부담 이용임
  - 다음과 같이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 시간제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 영아종일제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라형의 경우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서비스 이용 가능

#### 4. 아이돌봄사업 이용 현황

○ 연도별 이용가구 추이

- 2018년 이용가구는 64,591가구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표 1〉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단위: 가구)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가구	39,138	43,947	51,393	54,362	57,687	61,221	63,546	64,59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규모

1) 영아종일제

- 〈표 2〉는 최근 4년간 유형별 영아종일제 이용 현황임.
- 영아종일제 이용자는 2015년 5,614명, 2016년 5,641명, 2017년 5,495명, 2018년 4,997명으로 집계됨

〈표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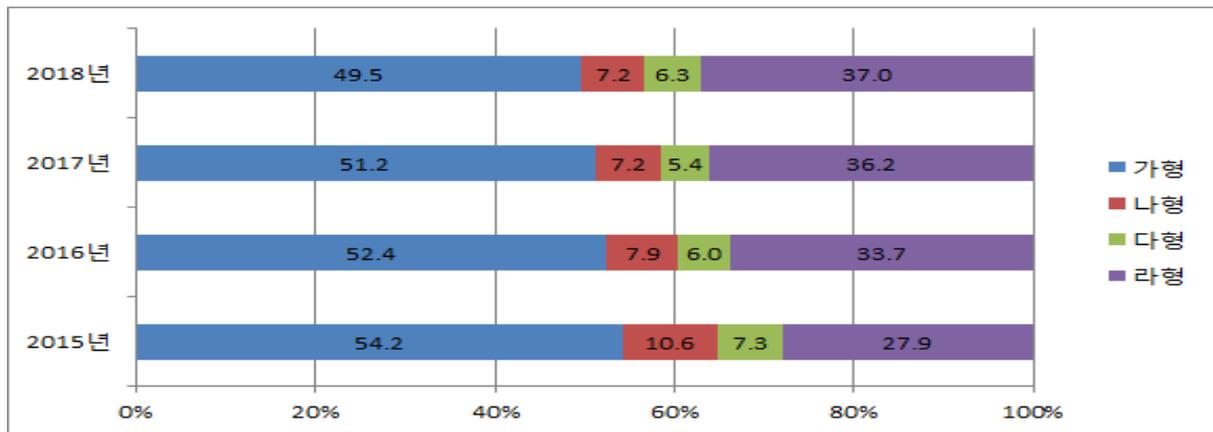
연 도	연 령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5년	0세	1,434	273	230	368	563
	1세	4,180	1,007	664	937	1,572
	계	5,614	1,280	894	1,305	2,135
2016년	0세	1,401	466	283	184	468
	1세	4,240	1,278	714	753	1,495
	계	5,641	1,744	997	937	1,963
2017년	0세	1,406	431	266	194	515
	1세	3,057	1,207	569	363	918
	2세	1,032	428	137	105	362
	계	5,495	2,066	972	662	1,795
2018년	0세	1,155	404	235	169	347
	1세	2,525	1,070	443	316	696
	2세	1,317	607	188	113	409
	계	4,997	2,081	866	598	1,452

주: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2017년에 만 36개월까지로 이용 대상 아동 연령 확대되어 2015년과 2016년은 1세 까지만 이용자 현황 있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영아종일제 이용자를 가구유형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가형 49.5%, 라형 37.0%이며 나형 7.2%, 다형 6.3%임. 한편 2015년에는 가형 비중이 54.2%로 절반이며 다음이 라형 27.9%, 나형 10.6%, 다형 7.3%임
- 즉 영아종일제의 경우 가형과 라형 이용자가 대부분임. 가형과 라형의 차이점은 가형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지만 라형은 그렇지 않아 보육시설과 영아종일제 서비스 병행 이용이 가능함. 가형의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 보육을 선택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파악이 요구됨(예를 들어 비전형 근로 등으로 인하여 정규보육시설 이용시간이외에 돌봄 공백문제가 있을 수 있음). 라형은 시설보육과 병행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양육 공백의 구체적인 사유 및 주요 이용 시간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추가적으로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파악도 필요함

(단위: %)



[그림 1]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가구유형별 비중

## 2) 시간제

- 다음 <표 3>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0세에서 5세까지 이용자 규모임
- 0세에서 5세 까지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 62,975명임. 2015년에는 53,410명, 2016년 58,031명, 2017년 62,212명이었음

〈표 3〉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0세~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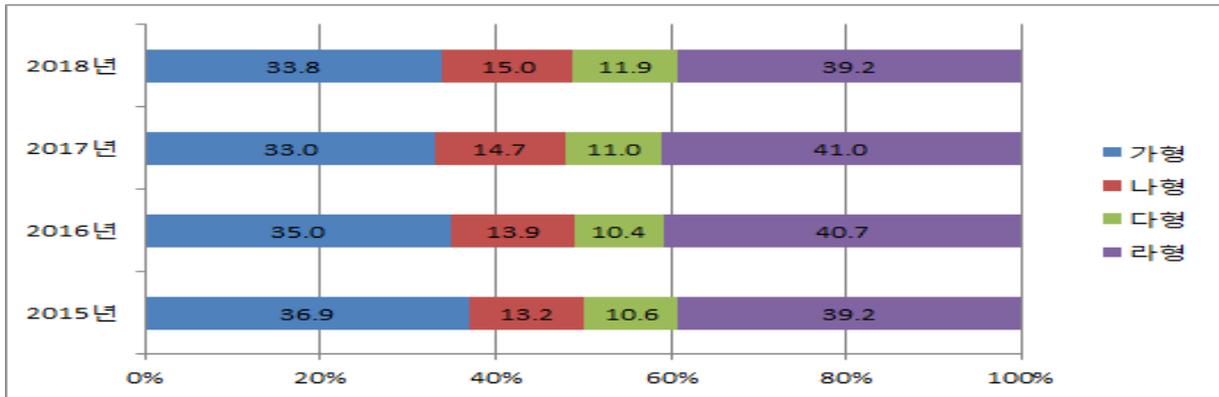
(단위: 명)

연 도	연 령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5년	0세~2세	26,184	7,961	3,590	2,946	11,687
	3~5세	27,226	11,749	3,478	2,733	9,266
	계	53,410	19,710	7,068	5,679	20,953
2016년	0세~2세	30,599	9,235	4,457	3,326	13,581
	3~5세	27,432	11,060	3,631	2,696	10,045
	계	58,031	20,295	8,088	6,022	23,626
2017년	0세~2세	34,505	9,903	5,261	3,981	15,360
	3~5세	27,707	10,834	3,864	2,893	10,116
	계	62,212	20,737	9,125	6,874	25,476
2018년	0세~2세	33,862	10,422	5,190	4,098	14,152
	3~5세	29,113	10,882	4,258	3,426	10,547
	계	62,975	21,304	9,448	7,524	24,699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다음 [그림 2]에서 시간제 돌봄서비스(0세~5세) 이용자 중에서 가구 유형별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 라형 39.2%, 가형 33.8%, 나형 15.0%, 다형 11.9%임. 전체 시간제 돌봄 이용자 중에서 라형이 비중이 가장 높고 가형이 두 번째임. 단, 가구유형별 이용 비중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라형 연계가 증가하기 때문임
- 그러나 이용자 비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인 라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형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즉 라형에 해당하는 계층 집단의 서비스 이용 수요가 높다는 점을 의미함. 라형 이용자의 경우 맞벌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은 높지만 돌봄 공백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가형의 경우는 정부지원금액이 나형과 다형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용 수요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집단임
- 반면 나형과 다형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가형에 비해 지원비율이 낮아 비용 부담 문제로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할 집단임

(단위: %)



[그림 2] 시간제 돌봄서비스 가구 유형별 비중(0세~5세)

- 다음 <표 4>는 시간제 돌봄서비스 초등학생 이용자 규모임. 초등학생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 26,680명임
- [그림 3]은 시간제 돌봄서비스 초등학생 이용자 중에서 가구 유형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가형 이용자 비중이 49.5%로 거의 절반이며 다음이 라형으로 37.0%임.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형 이용자 비중이 라형보다 더 많아 0세~5세 비중과 다름. 즉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라형 집단은 방과후에 학원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초등학생 연령대에 나형과 다형 비중이 낮은 것은 미취학아동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비중과 동일하게 이용 비용 부담문제일 것임
- 단, 초등학생 라형 시간제 돌봄 이용자의 경우 이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요구됨.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 등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학원 등 민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워서인지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대 등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됨. 라형이라 하여도 비전형 근로 등으로 인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임
- 또한 나형과 다형의 경우 돌봄 공백이 있음에도 이용 비용 부담 문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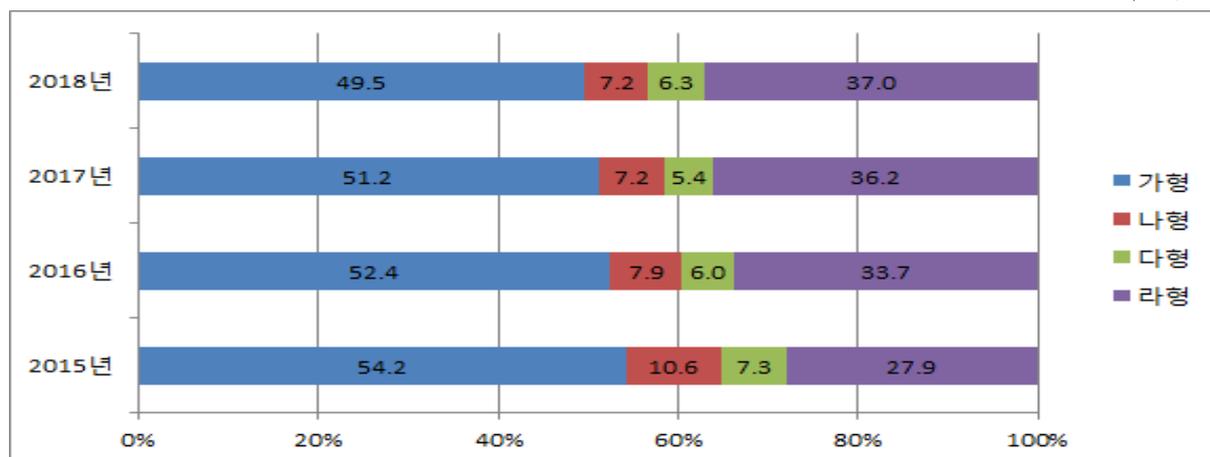
<표 4>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규모(초등학생)

(단위: 명)

연도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15년	25,470	13,817	2,692	1,861	7,100
2016년	25,175	13,200	1,988	1,509	8,478
2017년	24,919	12,765	1,801	1,344	9,009
2018년	26,680	13,203	1,926	1,670	9,881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단위: %)



[그림 3] 시간제 돌봄서비스 가구유형별 비중(초등학생)

## 5. 아이돌보미 근로 현황 및 문제점

### 가. 근로 현황 분석<sup>2)</sup>

- 아이돌보미 근로현황 데이터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통계(2015년~2017년)를 분석함. 분석 정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규모, 아이돌보미 이직률,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임금 등임
- 분석에서 사용한 용어와 계산법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용어와 계산법

구분	용어	계산법
1	실제 근로시간의 합	1~12월 근로시간의 합
2	실제 근로개월 수	1~12월 중 근로시간이 0시간 초과인 월
3	전체 아이돌보미	연간 0시간 초과 근무자
4	연간총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의 합 (주간+야간+휴일)
5	연간총임금	1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합 (수당+활동지원금+교통비)
6	인당월평균임금	연간총임금/실제 근로개월 수
7	전체월평균임금	인당월평균임금의 합/전체 아이돌보미 수
8	인당월평균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의 합/실제 근로개월 수
9	전체월평균근로시간	인당월평균근로시간/전체 아이돌보미 수
10	이직률	근로종료일이 12/31일이 아닌 자/전체 아이돌보미 수*100

2) 아이돌보미 근로현황 분석은 김영란 외(2018)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장 일부분을 발췌인용함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2017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22개소임

〈표 6〉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15	2016	2017
기관 수	214	217	222
종사자 수	17,790	20,047	21,065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아이돌보미 규모별 기관 현황

- 아이돌보미 규모별로는 100인~200인 미만인 35.6%로 가장 많고 다음이 5인~50인 미만으로 33.8%임. 300인 이상과 5인 미만 각 1개소 있음

〈표 7〉 아이돌보미 규모별 기관 현황(2017년 기준)

구분	빈도	%
5인 미만	1	0.5
5인~50인 미만	75	33.8
50인~100인 미만	49	22.1
100인~200인 미만	79	35.6
200인~300인 미만	17	7.7
300인 이상	1	0.5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아이돌보미 임금

-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주간수당, 휴일 및 야간 수당, 활동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한 경우 교통비가 지급됨
- 아이돌보미 임금(주간 + 휴일 + 야간 + 활동지원금 + 교통비)은 2017년 기준 82만 9천원임. 2015년 76만 5천원, 2016년 80만 4천원임. 2017년 근로시간별 임금은 60시간 이하 31만 4천원, 61시간~174시간 이하 92만 1천원, 175시간 이상 176만 1천원임
- 임금 가운데 주간수당만 살펴보면 전체 아이돌보미의 경우 2017년에 월평균 71만 1천원이며, 2015년 66만 7천원, 2016년 69만 7천원임. 근로시간별로 보면 2017년 기준, 60시간 이하 27만 3천원, 61시간~174시간 이하 79만원, 175시간 이상 150만 2천원임



〈표 8〉 아이돌보미 근로시간별 월 평균 임금

(단위: 원)

연도	구분	임금 (주간+휴일+야간+ 활동지원금+ 교통비)	수당 (주간+휴일+ 야간)	주간 수당	휴일+야간수당		주간+휴일+ 야간+활동 지원금
					휴일	야간	
2015	전체 아이돌보미 (n=17,790)	765,951	716,844	667,191	43,747	5,906	756,295
	60시간 이하 (n=6,995)	365,694	341,343	323,749	15,434	2,159	358,593
	61-174시간 (n=9,044)	937,718	876,746	809,641	59,515	7,589	926,068
	175시간 이상 (n=1,751)	1,477,734	1,391,018	1,303,429	75,410	12,179	1,468,169
2016	전체 아이돌보미 (n=20,047)	804,517	750,044	697,702	46,974	5,368	793,577
	60시간 이하 (n=8,344)	391,934	364,199	347,277	15,427	1,495	384,397
	61-174시간 (n=10,113)	1,013,503	943,631	871,086	65,536	7,010	1,000,160
	175시간 이상 (n=1,590)	1,640,445	1,543,589	1,433,874	94,464	15,251	1,626,928
2017	전체 아이돌보미 (n=21,065)	829,747	769,157	711,759	37,868	19,529	819,397
	60시간 이하 (n=6,655)	314,075	290,714	273,413	11,534	5,767	308,074
	61-174시간 (n=11,901)	921,588	850,283	790,237	39,625	20,421	910,175
	175시간 이상 (n=2,509)	1,761,912	1,653,395	1,502,208	99,386	51,801	1,745,068

주: 전체월평균임금 = 인당(1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합/실제 근로개월 수)의 합/전체 아이돌보미 수(연간 근로 시간 0시간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별 구성비

- 아이돌보미 활동시간을 60시간 이하, 61시간~174시간, 175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분석함. 월 60시간 이하는 단기근로자로 4대 보험 등 가입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기준인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므로 두 번째 구간은 61시간 이상~174시간으로 정하였고, 175시간 이상은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임
- 아이돌보미 중 월평균 60시간 이하 활동자는 2017년 기준 31.6%임. 2015년 39.3%, 2016년 41.6%에서 감소함
- 61시간~174시간 활동자는 2017년 기준 56.5%임

- 월 평균 175시간 이상을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2017년 기준 11.9%로 2015년에 비해 2.1%p 증가함
- 2017년 기준 월평균 60시간 이상 활동 아이돌보미는 전체의 68.4%임

〈표 9〉 근로시간별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2015-2017)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인원수	구성비
합계	17,790	100	20,047	100	21,065	100	0.09	0.00
60시간 이하	6,995	39.3	8,344	41.6	6,655	31.6	-0.02	-0.10
61시간~174시간	9,044	50.8	10,113	50.4	11,901	56.5	0.15	0.05
175시간 이상	1,751	9.8	1,590	7.9	2,509	11.9	0.20	0.10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별 월평균 근로시간

- 60시간 이하 집단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35.86시간임. 2015년 38.66시간, 2016년 38.17시간에서 2017년 감소함
- 61시간~174시간 집단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105.76시간임
- 175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210.74시간임

〈표 10〉 근로시간별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명, 시간)

연도	구분	합계	주간	야간+휴일	야간+휴일	
					야간	휴일
2015	전체 아이돌보미(n= 17,790)	86.63	71.35	15.28	1.70	13.58
	60시간 이하(n= 6,995)	38.66	33.23	5.42	0.47	4.94
	61-174시간(n= 9,044)	100.27	80.08	20.19	2.17	18.01
	175시간 이상(n= 1,751)	207.86	178.52	29.33	4.18	25.14
2016	전체 아이돌보미(n= 20,047)	82.44	69.07	13.38	1.55	11.83
	60시간 이하(n= 8,344)	38.17	33.85	4.32	0.39	3.93
	61-174시간(n= 10,113)	99.77	81.54	18.23	2.01	16.22
	175시간 이상(n= 1,590)	204.59	174.53	30.06	4.74	25.32
2017	전체 아이돌보미(n= 21,065)	96.18	81.30	14.88	1.63	13.26
	60시간 이하(n= 6,655)	35.86	31.39	4.47	0.39	4.08
	61-174시간(n= 11,901)	105.76	90.34	15.42	1.61	13.81
	175시간 이상(n= 2,509)	210.74	170.77	39.98	5.01	34.96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아이돌보미 사회보험 가입률 및 변화추이

-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아이돌보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3.4%, 건강보험 69.9%, 고용보험 80.4%임
- 60시간 이하 아이돌보미는 국민연금 25.0%, 건강보험 30.4%, 고용보험 66.7%임
- 61시간~174시간 이하는 국민연금 61.4%, 건강보험 81.9%, 고용보험 84.4%임
- 175시간 이상은 국민연금 68.8%, 건강보험 88.8%, 고용보험 86.5%임
- 보험 가입률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급격히 증가함. 2016년부터 활동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임. 2015년 12월에서 2017년 12월까지 전체 아이돌보미의 보험가입률 증가율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1.22%, 건강보험 1.08%, 고용보험 1.12%임

〈표 11〉 아이돌보미 보험 가입률(2015-2017. 12. 기준)

(단위: 명, %)

연도	구분	국민		건강		고용	
		가입자	백분율	가입자	백분율	가입자	백분율
2015	전체 아이돌보미(n= 14,500)	1,894	13.1	2,830	19.5	3,115	21.5
	60시간 이하(n= 4,736)	464	6.6	659	13.9	858	18.1
	61-174시간(n= 8,146)	1,170	12.9	1,797	22.1	1,876	23.0
	175시간 이상(n= 1,618)	260	14.8	374	23.1	381	23.5
2016	전체 아이돌보미(n= 16,398)	7,460	45.5	9,341	57.0	10,769	65.7
	60시간 이하(n= 5,831)	1,675	28.7	2,082	35.7	3,251	55.8
	61-174시간(n= 9,097)	4,900	53.9	6,186	68.0	6,429	70.7
	175시간 이상 (n= 1,470)	885	60.2	1,073	73.0	1,089	74.1
2017	전체 아이돌보미(n= 17,456)	9,330	53.4	12,204	69.9	14,026	80.4
	60시간 이하(n= 4,284)	1,070	25.0	1,304	30.4	2,859	66.7
	61-174시간(n= 10,808)	6,634	61.4	8,848	81.9	9,121	84.4
	175시간 이상(n= 2,364)	1,626	68.8	2,052	88.8	2,046	86.5

주: 1) 가입자=2015-2017년 각 12월 근로한 돌보미 중 12월 가입자 기준

2) 가입자 백분율=(12월 가입자 수/12월 가입 대상자)\*100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표 12〉 아이돌보미 보험 가입률 연평균 증가율(2015-2017. 12. 기준)

(단위: %)

구분	국민	건강	고용
전체 아이돌보미	1.22	1.08	1.12
60시간 이하	0.52	0.41	0.83
61시간~174시간	1.38	1.22	1.20
175시간 이상	1.50	1.34	1.32

주: 연평균 증가율(CAGR) = (최종값/최초값)<sup>1/(2017-2015)-1</sup>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내부자료) 원자료 분석

## 나. 아이돌보미 근로 관련 문제점

- 전체 아이돌보미의 68.4%가 활동시간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96.18시간임. 이에 법령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노동관계법 준수가 요구됨
  - 전체 아이돌보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3.4%, 건강보험은 69.9%, 고용보험 80.4%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가장 낮음. 특히 보험 가입 의무대상인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100%가 되지 않음
  - 2019년부터 주휴 및 연차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으나 휴게시간 부여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조항임에도 시간 단위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근로내용과 영유아 아동 돌봄이라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결방안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아이돌보미 규모별 기관 현황을 보면 100인~ 300인 미만이 43.3%이고 5인 이상 100인 미만이 55.9%임. 이미 근로자 규모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단, 아이돌보미의 업무 특성상 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음. 또한 타 직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로서의 의무 또는 준수 내용 관련된 노무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아이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임

## Ⅲ. 아이돌봄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

### 1. 2019년 아이돌봄사업 변경 내용 및 평가

- 2019년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하여 사업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였음. 주 내용은 이용 요금(시간당 9,650원)과 돌봄 수당(시급 8,400원)을 이원화한 것임
  - 이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개편임
  -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임금체계 적용이 이용자 가정의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동시에 가형, 나형, 다형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정부지원시간도 확대함
-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 및 준수 적시(예를 들어 법정 제수당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 매뉴얼 마련
  -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관리 인력(팀장급) 지원
  - 예산 집행 기준에서 아이돌보미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경비 인정 등



○ (평가)

- 서비스 이용 요금과 돌봄 수당을 이원화함으로써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임금체계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됨

## 2. 현행 아이돌봄사업 관련 문제점

○ 첫째,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수요를 추정하고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규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결과 매년 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대기 수요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공적 돌봄에서 이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재가돌봄서비스 수요는 정확한 규모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시설 보육 이용 시간대, 부모의 일하는 시간대, 가족내 돌봄 조력자 여부 등등 돌봄 공백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유가 있기 때문임. 그 결과 수요 대비 공급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장시간 근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비전형시간대 근로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또한 시설보육 이용 시간이 주로 오후 4시에서 5시 까지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재가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지 어려운 공적 서비스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은 육아지원체계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보완적 서비스로서 사각지대를 충족하는 서비스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아래 연령대별 돌봄 현실을 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보육과 동등한 위치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육이용 현황이나 방과후 돌봄 이용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일 뿐임

	영아 (0~2세)	유아 (2세~6세)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보육시설	→			
학교			→	
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아카데미				초4부터
아이돌봄서비스	→			
돌봄 관련 문제	-(이용 시간)수요맞춤형 탄력적 이용 불가, 비전형근로자 및 심야, 휴일 등 이용 어려움 -거주 지역 인접한 시설이 없을 경우 접근성 문제 발생 -한부모 등 취약가족의 경우 시설 이용에도 돌봄 공백 발생 - 영아를 시설에서 보육 하는 문제      -기관보육서비스의 질      -돌봄 공극 불충분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돌봄 기능 부재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돌봄 기능 부재      -돌봄 공극 부재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돌봄 기능 부재			

- 둘째, 서비스 이용 수요와 정부지원의 미스매칭 발생, 이용 수요 대비 서비스 재설계 필요
  - 이용자 현황 분석에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이용 비중을 보면 가형과 라형이 대부분임. 추가적으로 면밀한 이용자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정밀 진단이 요구되지만 현재 나형과 다형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비용 문제가 아닌가 추정됨. 따라서 나형과 다형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지원 비율 재조정 등이 필요함. 2019년 지원 비율을 확대하였지만 서비스 이용 요금에 인상되어 비용 부담은 동일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2019년 이용자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라형의 경우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들 집단의 재가돌봄지원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공적 돌봄서비스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아종일제의 경우 라형의 경우 시설보육과 병행이용이 가능한데, 가형, 나형, 다형은 중복 지원 불가 원칙에 의해 이용하지 못함.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형, 나형, 다형의 경우 비전형근로 등으로 인하여 시설 보육 이용 시간 이외에 돌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 설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따라 인력 운영 및 사업수행 기관 관련 체계 재검토가 요구됨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휴게시간 부여를 위한 방안으로 대체 인력을 운용할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운영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됨. 즉 대체인력의 경우 시간제 급여로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주로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따른 문제가 있으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로서의 의무 준수 등이 포함될 경우 인력 운영 방식도 재설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가장 핵심적으로는 아이돌보미가 고용 안정성 및 일정한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2017년 기준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이돌보미는 전체의 68.4%임. 그러나 임금(주간+휴일+활동지원금+교통비)을 보면 2017년 기준 61시간 ~ 174시간 일하는 경우 월 평균 92만 1천원으로 높은 수준이 아님

### 3.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사업 발전방향 제안

####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책대상과 목적 재조정 방안 제안

- 1) (1안) 취약가족 재가자녀돌봄지원

#### ○ 주요 내용

- 취약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 수요를 충족함. 취약가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거나 비전형시간 대 근로를 할 가능성 있어 보육시설 이용시간이외에 충분한 돌봄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임



- (취약가족) 가구소득 일정기준이하(예: 중위소득 160%이하),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 현행보다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월 이용시간 한도 및 비용 지원 확대, 자부담 수준 낮춤
- 단, 현재 라형 서비스는 중단

○ 서비스 설계

- (영아 종일제) 보육시설과 영아종일제 병행 이용, 오후 6시 이후 돌봄 공백 있는 경우에만 가급적 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도록 설계
- (유아 재가돌봄서비스) 보육시설 + 아이돌봄서비스 조합. 보육시설에서 오후 6시까지 돌봄, 시설이용 시간 이후 돌봄 공백 있을 경우, 가급적 정기적인 돌봄 이용, 월 이용시간 한도 확대 필요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학교 돌봄 + 방과후 돌봄기관 + 재가돌봄 조합으로 설계

○ 쟁점 및 선결과제

- ① 영아보육시설과 서비스 중복 문제 발생, 조정 필요
- ② 보육시설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모두 고려할 경우 취약가족 아동 1인당 지원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
- ③ 그동안 라형 서비스 이용 가구의 이용불가에 따른 저항
- ④ 라형 가구의 경우 민간베이비시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질 관리 요구 높아질 것임. 민간업체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민간베이비시터업체가 아이돌봄 서비스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2) (2안) 저출산 대응 보편적 돌봄서비스로서 재가자녀돌봄지원

○ 자녀 돌봄 공백 지원, 즉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설계

- 보육시설이나 방과후 돌봄 이용 시간 이후 돌봄 공백 시간에 부모나 보호자 부재인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재가에서 돌봄 지원
- 돌봄 공백 입증은 기관보육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로 시간 및 근로일 기준으로 입증
- 실태조사 결과 기관보육 이용 시 실제 하원시간이 대략 오후 4시임. 보육시설 운영 규정에 정해진 이용가능 시간이 아닌 실제의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기관보육의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어린이집 이용시간 오후 4시 30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유치원의 경우 오후 3시 -4시에 이용률 감소(유희정외, 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정책 연구:p224)
- 이용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 자부담 수준 차등 적용

- 저출산 대응 제도로써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행 라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자부담 80%로 조정하는 등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서비스 설계

- 영아의 경우 시설보다는 개인돌봄 선호, 종일제 돌봄 확대 운영 필요
  - ※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어린이집 이용 68.7%, 친인척 돌봄 53%이며 59.1%가 두 가지 돌봄 병행,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시간대는 오전 9시-4시임(유희정의, 2014, 취업 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p285)
- 유아 및 초등생 대상 정기적 돌봄 서비스 운영, 어린이집 하원시간이후 및 방과후 돌봄기관 이용이후 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설계, 월 단위 이용 계약을 맺고 아이돌보미 파견
- 단, 일시긴급돌봄지원은 보완적으로 운영. 일시긴급돌봄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는 월상시고용으로 별도 인력 관리 필요

○ (쟁점)

- ① 현행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조정 필요, 예를 들어 24시간, 야간연장보육, 온종일 돌봄 등 기관베이스 돌봄 지원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 ② 예산 확보 필요. 정기적 돌봄 지원으로 라형까지 지원할 경우 사업예산 증가 불가피,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③ 또한 일시긴급돌봄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별도 인력 채용 시 휴업수당 보장 등 인건비 예산 확보 필요

나. 사업 운영 체계 관련

○ 사업 기획과 집행 주체 분리

- (방안) 종합적인 사업 목적 설정 등 기획 및 관리는 중앙정부가 하되, 모든 사업 집행을 지방 정부에 이양함
- (쟁점) 예산에서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 전액 지방비 방식 결정 필요.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필요

○ 사업 수행 기관 위탁 방식

- 허가제, 또는 등록제 가능
- 유사 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 등록제에 따른 단점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음. 예를 들어 제공 기관 난립에 따른 경쟁,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또한 등록제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으로 통제가 가능함. 단, 민간업체의 진입 허용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비 집행 관련

- 기관운영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고 서비스 수가로 지급 방식



※ 최근 근기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관련 개선 과제 연구의 제안에 따르면, 운영비 미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함.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휴 및 연차 등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기준단가를 책정하여야 하는데, 현재 서비스 수가 대비 상당한 금액의 인상이 요구되며 결국 이용자의 자부담 상승을 초래하게 됨. 운영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의 기관은 운영이 어렵게 됨

- 사업비 + 운영비 지원 방식 : 안정적인 사업 집행 기반 가능, 기관에 대한 평가 및 퇴출 등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지원 가능한 방식
- 현행 전자바우처 사업의 수가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다수

○ 민간서비스로 대체

- (방안) 아이돌보미 인력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업체 관리감독만 남기고 서비스 연계 등은 민간 서비스로 전환
- (쟁점)
  - ① 공적 재가돌봄지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추진한 정부사업 및 재정 투입에 대한 의미 훼손 문제, 자녀돌봄지원 사각지대 발생으로 저출산 정책 역행 가능성 존재
  - ② 민간서비스사업자 관리감독 방안 모색 필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및 민간사업자 등록 및 관리감독, 패널티 규정 등 보완 필요
  - ③ 아이돌봄인력(아이돌보미 및 베이비시터)에 대한 엄격한 자격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 민간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아도 제공기관 및 돌봄인력 관리 방안 모색 필요
- (제공기관) 사업주로서 정체성 및 지위 부여 필요. 정부사업 대행자로서 사업주의 지위 가지게 됨. 수행기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퇴출, 패널티 부여, 반대급부로 운영비 지원 방식 고려 가능. 운영비 지원 시 진입 가능한 제공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영리 or 비영리 등)은 서비스의 목적 달성과 관련 검토 필요하며, 위탁지정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바우처 수가방식일 경우, 제공기관 등록제로 운영하되, 엄격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함 대한 제한은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돌봄인력) 일자리로서 고용안정성 및 근로자 보호 및 책무 수행 요구 필요.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관리 체계 필요. 돌보미 협회 등 구성하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등을 전담하는 방식 가능함. 단 보육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진 어려우므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하되 국가 공인을 받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있음

## [붙임] 아이돌봄사업 예산 현황

-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2018년 기준 국비와 지방비 모두 합하여 168,960백만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국비 기준 2018년도 예산 총액은 108,377백만원임. 이 중 사업비는 85,472백만원, 아이돌보미 교육관리비 13,719백만원, 기관 운영비 9,186백만원임

### [아이돌봄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계	122,748	122,803	129,603	136,622	168,960
	국비	78,516	78,716	82,816	87,899	108,377
	지방비	44,232	44,087	46,787	48,723	60,583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아이돌봄사업 국비 예산(항목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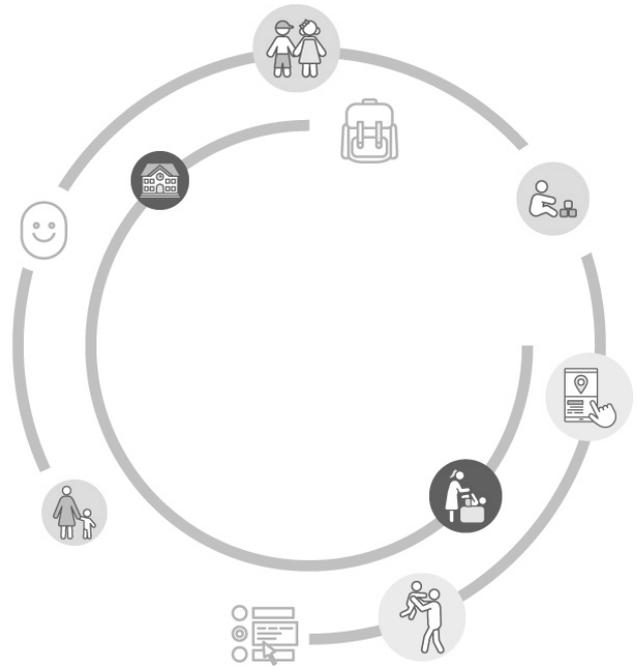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계	20,147	40,189	43,464	70,818	79,174	78,716	82,816	87,899	108,377
	사업비	19,099	34,041	37,261	59,273	63,949	62,374	66,283	70,788	85,472
	돌보미 교육, 관리	606	1,622	1,585	3,779	7,598	9,373	9,373	9,373	13,719
	기관 운영비	-	4,048	4,048	7,208	6,969	6,969	7,160	7,738	9,186
	아이돌봄지원 중앙사업관리	442	478	470	358	458	-	-	-	-
	민간베이비시터 교육관리	-	-	100	200	200	-	-	-	-

주: 국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발제 2



#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방안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들어가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보육수요자의 가정 내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사업’이다.

이와 같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시설 중심의 보육제도의 사각지대 축소, 저소득 취업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보미가 가정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로서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시책 등 공급자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는 2017년 판결에 의해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이 보장되었고, 2018년 6월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었다.<sup>1)</sup>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아이돌봄 지원법」은 상황적 변화를 수용하여 법 내용을 새롭게 구성 또는 수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발표문은 「아이돌봄 지원법」의 제·개정 과정과 현행 법률의 구조 및 주요내용을 살펴 본 후에 「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2. 「아이돌봄 지원법」의 제·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 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개정과정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0.10.17. 자녀돌봄지원법안(이정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10337)으로 발의된 후 법률명이 「아이돌봄 지원법」으로 수정되어 2012. 2.10. 제정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의 제정이유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sup>2)</sup>하려는 것이다.

1)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업무가 서비스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점을 들어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판단했다. “서비스 기관 5곳이 아이돌보미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표준계약서)에 아이 돌보미들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돼 있고, 월례회의·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내렸으며, 보수교육 이행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수행 외의 업무도 지시했다”며 “또 아이돌보미들이 제출하는 활동 일지와 이용자 민원 등을 통해 이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했다”(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아래의0308 판결 참조)



즉 시설중심 보육의 사각지대 축소,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특히 취약계층 보육지원,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법률의 적용범위</b>	이 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
<b>아이돌보미 직무 및 자격제도</b>	아이돌보미의 업무: 아이의 질병·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등 아이돌보미의 자격: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등으로 정하고, 보수교육 실시를 의무화
<b>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리·평가</b>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아이의 건강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적정운영 여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b>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b>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b>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원에 필요한 신청, 재산 및 소득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b>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b>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키고,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타법 개정에 따른 개정을 제외하고는 네 차례의 개정으로 제정 당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그치고 커다란 변화는 없다.

	개정 이유	개정 내용
제1차 개정 (법률제11833호, 2013. 5. 28. 일부개정, 2013. 11. 29 시행)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하고 획일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 민간 서비스기관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우선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1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li> <li>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제공기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li> <li>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7조제1항제4호 신설).</li> </ul>

2) 법제처,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537&chrClsCd=010102>

	개정 이유	개정 내용
제2차 개정 (법률제12531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4. 3. 24 시행)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3차 개정 (법률제13538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5. 12. 1 시행)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서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지정 약정을 해지하기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적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6조제1호).</li> <li>•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를 반영하여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지정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제9조 제1항).</li> <li>• 실효성이 적은 서비스기관의 폐업 등 신고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정리하고, 과태료 부과수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16조 및 제37조제1항제2호).</li> <li>•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에 대한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화 함(33조)</li> </ul>
제4차 개정 (법률제14064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9. 3 시행)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제6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신설).</li>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제26조).</li> <li>•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제33조 제3호의2 신설).</li> </ul>
제5차 개정 (법률제15270호, 2017. 12. 19., 타법개정, 2019. 7. 1. 시행)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에”를 “장애 정도에”로 한다. ⑤ 생략

## 나.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의 주요내용

이상의 개정 과정을 거친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총 7개의 장(제1장 총칙, 제2장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제3장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제4장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7장 보칙) 37개 조문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아이돌봄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아이돌보미의 자격 명의대여 등의 금지 교육기관의 지정 등 보수교육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서비스기관 정보의 제출 등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표준계약서 작성 보호자의 준수사항 서비스기관에 대한 권고 등 서비스기관 지정의 취소 등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제4장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공동육아나눔터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비용의 지원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 비용 지원 업무의 전자화 비용의 보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지도 및 명령 질문 및 검사 비밀누설금지 청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이상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은 그 내용과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목적과 정의,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에 관한 부분(I)과 국가 등의 지원 부분(II), 아이돌보미 직무 등을 정한 부분(III),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등을 열거한 부분(IV),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 관련 (V),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을 정한 부분(VI), 지도 및 감독 등을 정한 부분(VII), 벌칙을 정한 부분(VIII)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		조문		주요내용
I. 총론		제1조	목적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2조	정의	아이, 보호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제3조	지원의 원칙	아이의 이익 최우선 고려,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II. 책무 등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
III.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직무	제5조	아이돌보미 직무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아돌보미의 주의의무(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돌봄장소 무단이탈 등 업무시간의 개인적 이용 금지) 아이돌보미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
		제6조 제7조 제10조	결격사유 아이돌보미 자격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  자격: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제9조 제10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보수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지정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 보수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IV.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취소, 관리·평가	제11조	서비스제공 기관 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해야 함.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제17조	지정의 취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1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6.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음.
		제18조	관리·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이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리·평가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분류	조문		주요내용	
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3조	임무 등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함.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다만,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사항을 이행해야 함.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제13조의2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	
	제14조	표준계약서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서비스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V 비용의 지원	지원·보조·이용권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음.
		제21조	이용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신청·정보제공 등	제22조	비용의 신청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을 할 때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함.
		제2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을 제공해야 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됨.
		제24조	조사·질문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비용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소속 공무원은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사람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제25조	비용지원 업무의 전산화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분류		조문		주요내용
VI 양육 친화 사회 환경 조성	공동 육아	제19조	공동육아 나눔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제32조	자격정지	<p>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p> <p>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p> <p>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p> <p>3.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p> <p>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p>
VII 지도 및 감독	자격 정지 및 취소	제33조	자격취소	<p>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p>
		제28조	지도 및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9조	질문 및 검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제30조	비밀누설금지	서비스기관 및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VIII 벌칙	벌칙 등	제35조 ~ 제37조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기준을 위반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기준을 위반하여 서비스기관 지정을 받은 자 등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조를 위반한 사람,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등)</p>



### 3. 「아이돌봄 지원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안

#### 가.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직무, 자격, 교육기관의 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법률은 개별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나 권리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서비스 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서비스 기관에서 정하는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 6.25일 광주지방법원은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연장근로·휴일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였다.<sup>3)</sup>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개정, 2018.7.1. 시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55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이 대폭 축소되어 운송업·보건업 외 거의 모든 산업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p>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li> <li>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li> <li>3. 의료 및 위생 사업,接客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li> <li>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li> </ol>	<p>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li> <li>2. 수상운송업</li> <li>3. 항공운송업</li> <li>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li> <li>5. 보건업</li> </ol> <p>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p>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3)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현재 노동3권 인정됨.

이로 인해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히 휴게 시간 부여 방안 등이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제54조 제1항).

“이용가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보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친·인척이 돌봄을 대체하거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특히 친·인척 및 가족에 의한 대체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시 시간대를 휴게 시간 부여 전·후로 나누어서 2번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이용계약 체결 시 합의 하에 아이돌보미에 대한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sup>4)</sup>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이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의 특성 상 위의 ‘부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이 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노조는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노동하는 시간만큼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정 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결격 사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을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정은 이와 같이 국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소개업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뿐 아니라 민간 베이비시터의 전문성 및 자질 등의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민간의 베이비시터 등의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가사근로자이다.

이 법률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정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home.go>



<p>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 (안 제5조 및 제7조)</p>	<p>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p> <p>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인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p>
<p>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안 제8조)</p>	<p>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p>
<p>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안 제9조)</p>	<p>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함.</p>
<p>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안 제10조 및 제12조)</p>	<p>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아니한 가사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함.</p>
<p>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안 제13조)</p>	<p>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용계약에는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함.</p>
<p>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안 제19조)</p>	<p>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근로기준법」과 맞춤.</p>

이 법률안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리 이용계약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게는 이용계약 준수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 나. 개정 방안

이상과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향과 방안을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국가 등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법 제3조는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으로

아이의 이익 최우선 원칙 이 외에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 충족의 필요함은 부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서비스 공급자의 요구가 배제되어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거나 향상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에 보호자와 아이돌보미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4조 국가 등의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돌보미의 지위 향상과 복진 증진 등을 위해 시책 마련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통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태 조사를 법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행	개정안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u>보호자와 아이돌보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u>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의 지위 향상과 복진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u>&lt;신설&gt;</u>	제10조의2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보미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처우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을 전제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조건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휴게시간 부여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돌보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친·인척이 돌봄을 대체하거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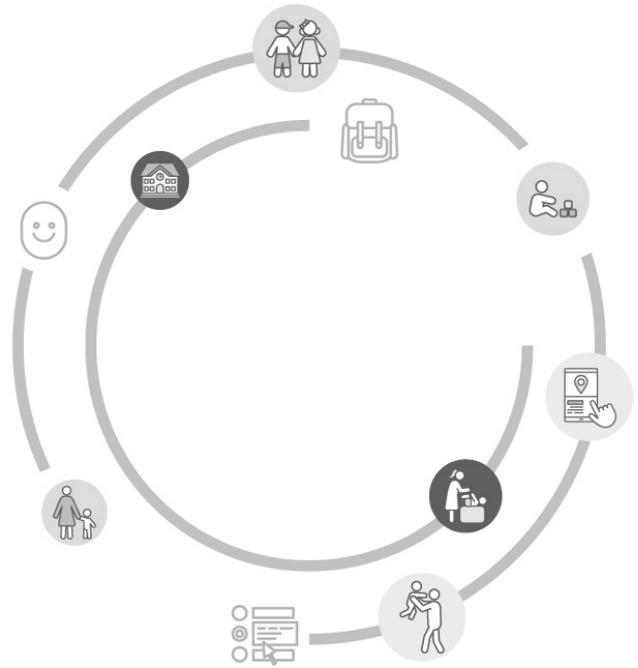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lt;신설&gt;</u>	제5조2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 등) ① 아이돌보미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부여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4조(표준계약서 작성) ①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로계약 체결) ① 서비스기관은 소속 아이돌보미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셋째,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통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가정보육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앞에서 살펴본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민간 베이비시터 제공기관은 이 법률에 의해 규율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12조는 서비스제공 기관의 정보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아이돌보미 DB관리 및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 베이비시터의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자율적으로 DB에 등록하게 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토론문

-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 이성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 이재춘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 최민영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토론문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향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여의도나 이촌동 일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부엌 한편에는 사람이 겨우 누울만한 길이와 크기의 공간이 하나씩 있음. 중개업자에게 물어보고나서야 그 공간이 ‘식모’라고 불리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문득 아파트 기본 설계에 들어갈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가사노동자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했음. 지금 아이를 한창 키우고 있을 30-40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때)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자녀세대이기도 함.

본인은 현재 만4세와 9개월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처지임.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자인 중산층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기억은 끝없는 대기였음. 첫째인 만4세의 경우 결국 대기하다 지쳐 민간업체의 소개를 받아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었음. 둘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기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직접 고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아이돌봄비에 대해 근로자성을 전제한다면 현실적으로 논의 및 해결해야할 사항이 있음. 근래 현안인 휴게시간에 한정해 논의하자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함(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단순한 휴식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날 것, 독립적인 휴게장소의 구비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아래 상자 판례 참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다74254)

하지만 천차만별인 가정내 환경과 아이돌봄이라는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요건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임.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가정 내 노동에 대해 노동법령을 적용하는 법제와 가사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제가 존재하는 바, 양 법제 중 어떤 형태를 취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보임. i) 현실적인 감독의 어려움 ii) 사용자성 인정의 어려움 및 노동법 존재의 근본 이유인 사용자 노동자간 교섭력 차이의 문제가 일률적으로 발생하게 어려운 다양한 계약형태 (업체가 고용하여 파견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업체가 알선만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점 iii) 노동법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타 가사노동에 대한 일률적인 규율의 필요 iv)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고객, 알선업체 등에 대한 통일 규율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노동법령이 아닌 가사노동 전체를 규율하는 별도 법제를 만드는 방안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가사노동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 해당 법제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성을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 방향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추진단장)

### 1.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안 검토

#### □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방안 검토의 필요성

- 보육·양육지원 부문의 최근 개편 모색 등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위상 재정립 및 방향성 진단 필요함.
  -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양육지원 체계 개편 → 가정양육수당 개편에 따른 가정내 양육 수요 변화
  - 공보육 인프라 확충(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 기관보육 이용율 제고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영아 맞춤형보육) → 종일제 보육 내실화
  - 기업의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 부모권 보장 강화에 따른 가정내 직접 돌봄 가구의 증가
  -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노력 → 초등돌봄 공백 해소

####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목적(아이돌봄지원법): 일시양육 공백에의 대응, 1:1 개별보육 선호 취업부모의 가정내보육 서비스 및 요구에의 대응, 초등방과후 프로그램 공백 해소
- 연령별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 서비스 이용 동기
  - 영유아: 선택권 보장(어린이집의 가정내 보육 선호, 기관 부적응 등)
  - 초등자녀: 초등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 ※ 공적돌봄 이용율: 영유아 68% / 초등학생 12.5%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 중 서비스 이용시간이 ‘보육이 필요한 시간보다 부족하다’ 37.8%(유해미·이민희, 2017: 53~54)<sup>1)</sup>.

1)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구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53~54.



- ※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2009년 7시간 45분, 2012년 7시간 34분, 2015년 7시간 20분으로 점차 감소(김은설 외, 2016: 168)<sup>2)</sup>.
- ※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음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이유: 자녀가 시설보다 집에서 더편안하게 지낼거 같아서 43.2%, 영아자녀는 가정에서 1:1 돌보는 것이 좋아서 31.8%, 대기자가 많아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어서 11.4%(이정원 외, 2018: 97)<sup>3)</sup>
- ※ 기관 충분 이용 가능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의향: 이용 중단 69.3%, 계속 이용 30.7%(김아름·유해미·윤지연, 2018: 170)<sup>4)</sup>

〈표 1〉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 사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비용이 부담 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타	(수)
전체	59.8	36.4	20.3	9.4	7.7	7.0	5.6	(858)
자녀연령								
0세	33.0	69.1	26.6	13.8	3.2	12.8	6.4	( 94)
1세	44.8	61.4	25.5	6.2	2.8	13.1	6.2	(145)
2세	62.0	38.0	20.9	8.6	4.9	7.4	3.7	(163)
3세	69.8	24.9	13.6	10.1	9.5	5.3	6.5	(169)
4세	73.9	18.8	19.6	12.3	10.1	2.2	5.8	(138)
5세	64.4	18.8	18.8	7.4	14.1	3.4	5.4	(149)
영유아 구분								
영아	49.0	53.7	23.9	9.0	3.7	10.7	5.2	(402)
유아	69.3	21.1	17.1	9.9	11.2	3.7	5.9	(456)

자료: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03.

〈표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영유아 자녀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아이를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기에 너무 어려서	41.9(190)	48.8(221)
원하는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갈 수 없어서	14.3( 65)	35.8(162)
기관 하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7.9( 36)	18.1( 82)
아이가 기관(어린이집/유치원)에 적응하지 못해서	6.6( 30)	13.9( 63)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6.6( 30)	13.9( 63)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을 더 선호해서	6.6( 30)	23.2(105)

- 2)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3) 이정원 외(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4) 김아름·유해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구분	1순위	1+2순위
기관(어린이집/유치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5.7( 26)	16.8( 76)
기관 등원 시에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5.3( 24)	10.4( 47)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4.9( 22)	19.0( 86)
기타	-	0.2( 1)
계(수)	100.0(453)	(453)

자료: 김아름·유혜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5

〈표 3〉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동기\_초등자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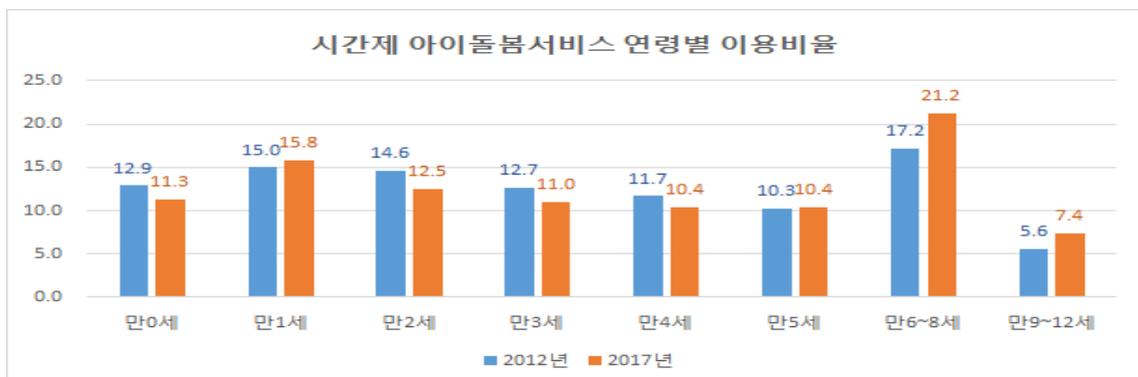
구분	1순위	1+2순위
초등 방과후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등)에 들어갈 수 없어서	38.3(18)	46.8(22)
하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27.7(13)	44.7(21)
초등 방과후 돌봄 기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2.8( 6)	38.3(18)
(공공)아이돌보미를 신청하였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	8.5( 4)	21.3(10)
등교 시에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해서	8.5( 4)	25.5(12)
추가자녀의 출산으로 돌보기 힘들어서	4.3( 2)	19.1( 9)
기타	-	4.3( 2)
계(수)	100.0(47)	(47)

자료: 김아름·유혜미·윤지연(2018).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36.

○ 서비스 유형별 수요: 이용 추이 및 특성

- 시간제돌봄 이용율: 만 6~8세아와 만 1세아 이용율이 높고, 가형 이용율은 감소하는 반면, 라형 이용율은 점차 증가
- 영아종일제 이용율: 만 1세아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라형 이용율 소폭 감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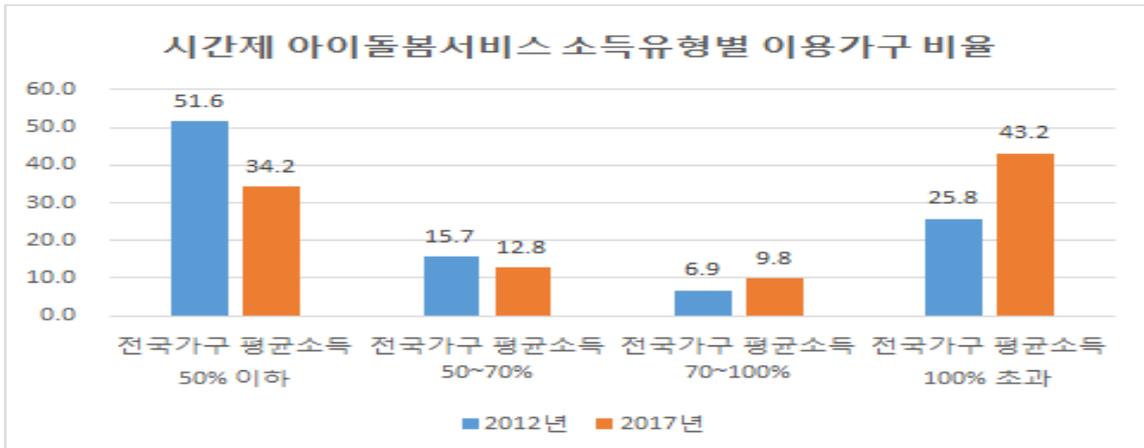


자료: 이정원 외(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1.

[그림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비율\_아동연령별(2012/2017)



단위: %



자료: 이정원 외(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5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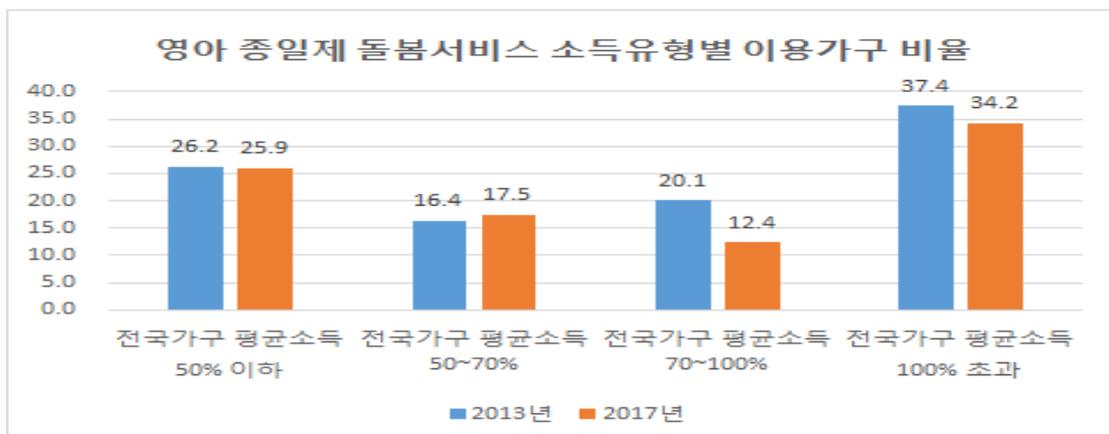
[그림 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비율\_소득유형별(2012/2017)

[표 4]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연령별 이용 수(2013~2017)

구분	계	만0세	만1세	만2세
2013년	3,850	1,428	2,422	-
2014년	4,557	1,390	3,167	-
2015년	5,614	1,434	4,180	-
2016년	5,641	1,405	4,236	-
2017년	5,495	1,406	3,057	1,032

자료: 이정원 외(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3.

단위: %



자료: 이정원 외(2018).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54-55.

[그림 3]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비율\_소득유형별(2013/2017)

-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따른 후속출산 지연 및 포기: 전일제 근로가구, 비전형적 근로형태 가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응답율 증가

〈표 5〉 맞벌이 가구의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단위: %(명)

구분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전체	41.5	30.6	25.6	2.0	0.3	100.0(1,198)
자녀연령						
0세	49.4	28.7	20.8	0.6	0.6	100.0( 178)
1세	46.1	23.3	28.9	1.7	-	100.0( 180)
2세	43.5	31.5	22.3	2.2	0.5	100.0( 184)
3세	42.5	30.9	24.2	1.4	1.0	100.0( 207)
4세	35.7	34.8	26.8	2.7	-	100.0( 224)
5세	34.7	32.4	29.8	3.1	-	100.0( 225)
영유아 구분						
영아	46.3	27.9	24.0	1.5	0.4	100.0( 542)
유아	37.5	32.8	27.0	2.4	0.3	100.0( 656)
가구 근로 형태						
전일제+전일제	45.7	28.5	23.9	1.6	0.4	100.0( 966)
전일제+시간제	24.1	39.2	32.8	3.9	-	100.0( 232)
본인 근로 형태						
전일제	43.8	29.9	24.1	1.8	0.4	100.0(1,037)
시간제	26.7	34.8	35.4	3.1	-	100.0( 161)
근무 형태						
일반근무	40.2	30.9	26.7	2.0	0.3	100.0(1,020)
교대근무	45.2	30.1	21.9	2.7	-	100.0( 73)
야간근무	51.4	27.6	18.1	1.9	1.0	100.0( 10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4	40.3	38.8	4.5	-	100.0( 67)
300만원 미만	39.3	36.5	23.3	0.9	-	100.0( 219)
400만원 미만	41.3	31.8	24.0	2.5	0.4	100.0( 242)
500만원 미만	41.3	33.8	23.0	1.4	0.5	100.0( 213)
600만원 미만	47.7	29.1	21.5	1.2	0.6	100.0( 172)
600만원 이상	45.6	21.1	30.2	2.8	0.4	100.0( 285)

주: 유해미·배윤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28.



- 부모의 직접 돌봄을 제외하고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 의료 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 29.0%(유해미·이민희, 2017: 64).

〈표 6〉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전반

단위: %(명)

구분	부모 휴가 제공	아이돌봄 서비스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환아전문 보육시설	대체교사 가정 파견	기타	계(수)
전체	58.7	13.5	12.1	9.1	6.5	0.1	100.0(1,000)
자녀연령1							
0세	56.8	6.8	11.4	15.9	9.1	0.0	100.0( 44)
1세	60.5	12.7	12.7	7.6	6.4	0.0	100.0( 157)
2세	55.2	15.7	13.9	8.9	6.0	0.4	100.0( 281)
3세	59.8	11.6	12.7	9.3	6.6	0.0	100.0( 259)
4세	59.6	17.5	7.8	8.4	6.6	0.0	100.0( 166)
5세	62.4	9.7	11.8	9.7	6.5	0.0	100.0( 93)
자녀연령2							
영아	57.1	13.9	13.3	9.1	6.4	0.2	100.0( 482)
유아	60.2	13.1	11.0	9.1	6.6	0.0	100.0( 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47.5	11.1	19.1	12.3	9.9	0.0	100.0( 162)
기관 단독 이용	60.9	14.0	10.7	8.5	5.8	0.1	100.0( 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6.5	8.7	17.4	13.0	4.3	0.0	100.0( 23)
400만원 이하	57.4	11.6	14.7	11.3	5.0	0.0	100.0( 319)
600만원 이하	58.5	15.3	11.2	6.7	8.0	0.2	100.0( 463)
600만원 초과	61.5	12.8	9.2	10.8	5.6	0.0	100.0( 195)
거주지역							
광역시	60.1	11.1	12.1	10.6	6.3	0.0	100.0( 398)
중소도시	58.1	15.0	11.9	7.8	7.1	0.2	100.0( 539)
읍면지역	55.6	15.9	14.3	11.1	3.2	0.0	100.0( 63)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p. 63.

⇒ ‘공적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의 함의 ← 0~5세 보편적 보육·교육지원(종일제보육 내실화)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휴직제도 강화

- 영아종일제: 영아를 둔 가구의 선택권 보장(휴직제도 이용 어려운 가구, 영아 기관보육 이용이 어려운 비전형적 근로가구, 기관 부적응 아동)

- 시간제돌봄: 장시간 기관보육 이후 서비스 병행(기관 부적응 유아 포함),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 및 보호(인프라 공급 수준 제고 시 까지)
- 지원유형: '라'형 미 제공(←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체계 구축 이후)
- 서비스 다양화: 기관보육 연계 서비스 강화(질병감염 아동 지원)

## 2.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방안 검토의견

### □ 아이돌보미 다양한 요구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보미 지위 및 복지 증진 시책 마련 가능 규정 신설

- 현행 규정에는 수요자(부모)에 대한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와 같이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더불어 아이돌보미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명시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 □ 실태조사 실시 조항 신설(제10조의 2)

####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영유아보육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한 '보육실태조사'와 「노인장기요양법」상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아이돌보미에 관한 사항(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을 신설하되, 이와 더불어 조사항목에 수요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도 추가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아이돌보미 근로조건 등(제5조의 2) 신설 및 휴게시간 수당 지급 가능 명시

- 아이돌봄서비스 특성 반영한 근로조건의 명시: 별도 유급휴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므로, 별도 적용사항은 지침에 명시

※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제7장) 규정내용: 보육교직원 배치, 직무, 책무, 임면 등, 결격사유, 자격, 자격증 교부, 명의대여 등 금지, 보수교육, 교육명령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고려사항

- 대체인력 공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력공급 및 채용 마련
- 대체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돌봄인력의 신뢰성, 전문성 보장
- 대체인력 업무 규정 마련
- 휴게시간 중 비상사태 등 대응 메뉴얼 개발(최효미 외, 2018: 103)<sup>5)</sup>

□ 추가 신설 조항: 아이돌보미 고충 해소에 따른 조치 의무화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35조의2(이하 “제35조의2”)에서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고충 해소를 요청할 시에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8. 12. 11.]

5) 최효미 외(2018). 보육교사 휴게시간 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지속가능한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 방향

이성일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 1. 아이돌봄 연계를 상승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법

신규양성이 아니고 월66시간 보장이 답

아이돌보미는 일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는 대기시간이 길다고 아우성을 치고 여성가족부는 끊임없이 신규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상반된 주장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이용자가정은 2019년 기준으로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월평균 6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평일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 20분정도이며, 이는 오전이건 오후건 한번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내 하나의 자치구에 아이돌보미가 100명, 이용자가 2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통상적으로 이들 중에 50명 정도는 출근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130명정도는 퇴근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20명 정도는 오전 오후 두 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오전에는 아이돌보미는 70명이 일을 할 수 있어 30명이 일이 없어 놀게 되며, 오후에는 아이돌보미는 100명 모두 일하지만 이용자 50명은 아이돌보미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전이건 오후건 한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약정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평균 52~60시간이기에 근로기준법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동자로 인정받는 월평균 66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더욱더 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설령 66시간을 한다고 한달 한달 급여는 67만원이 채 되지 않다보니 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일보 2018.03.22 기사

지난해 9월 복직한 백다영(37·여·가명)씨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 중 100만원(시간당 1만원)을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낸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복직 4개월을 앞두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오전 출근 시간대 2시간, 오후 퇴근시간대 3시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동주민센터는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자가 많아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초조해진 백씨는 결국 복직 한 달 전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베이비뉴스 2019.01.30.기사

◇ “돌보미들은 일 없어 투잡 뛰는데... 숫자만 늘리는 답답한 정책”

Q. 아이돌보미를 신청해도 대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다.

배 : “여성가족부는 이용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돌보미를 투입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돌보미 선생님들은 일이 없어 쉬고 있다. 쉽게 말해 탁상행정이다. 가정에서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다. 연간 720시간을 다 사용해 정부 지원이 끊기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니,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돌보미들은 투잡(겸업)을 많이 한다. 한 군데서 급여가 충족되면 왜 투잡을 하겠나.

...중략...

센터는 양성교육 인원에 따라 점수를 받고 예산을 받는다. 신입 돌보미가 얼마나 일하는지에 따라 점수를 주다보니 신입에게 일을 더 주려고 한다. 주 40시간도 일을 못 주는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보미 숫자만 늘리는 것이다. 왜 이런 답답한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다.”

센터는 양성교육에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다. 돌보미 선생님들은 일이 없어 아우성인데 센터는 인원 충원에 혈안이 돼 있다. 돌보미 선생님들 중에는 돈도 안 되고 센터에 일 달라고 사정해야 해서 그만둔 분들도 있다. 왜 현장의 목소리 안 듣는지 모르겠다.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너무 일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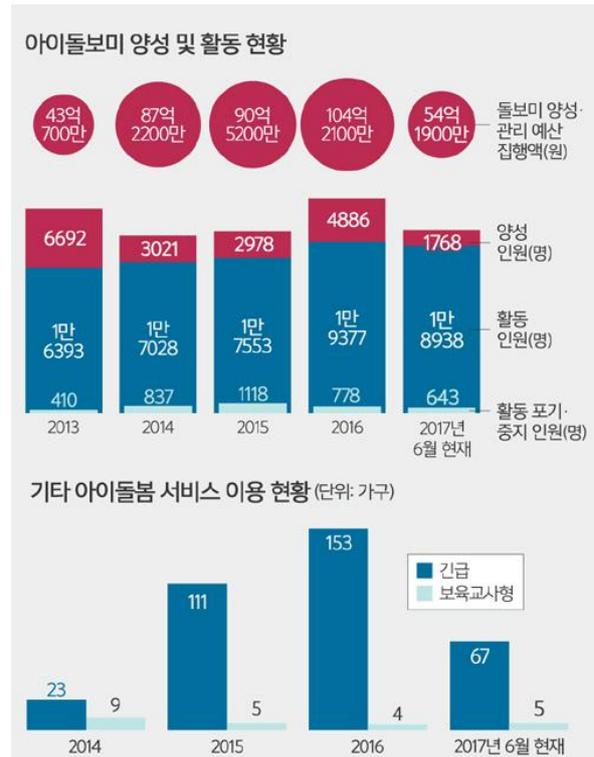
발제문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실적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아이돌보미 중 월평균 60시간 이하 활동자는 2017년 기준 31.6%이며, 61시간~174시간 활동자는 2017년 기준 56.5%이고, 월 평균 175시간 이상을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2017년 기준 11.9%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월평균 60시간 이상 활동 아이돌보미는 전체의 68.4%라고 밝히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인정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은 60시간 월평균 66시간이므로 발제문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아이돌보미 21,065명중에 31.6%인 6,655명이 2019년도

에는 비슷한 정도의 아이돌보미가 주휴수당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이이 돌보미를 신규로 양성하고 있지만 새롭게 양성된 아이돌보미건 기존돌보미건 30%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는 일이 부족하여 월평균 67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직을 하게 되다보니 적정 시간의 일을 보장하는 방법이 빠진 신규양성은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2014년 872억원을 들여 3021명 양성했지만 2014~2015년 실제 활동 인원은 345명 늘고, 2015년에도 2978명 양성에도 활동자 수는 1824명이 늘어서 신규양성과 실제 활동인원의 증가와 관련된 정부의 통계자료는 신규양성 대책이 실효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아이돌보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없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월평균 66시간(4주평균 60시간 주당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66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채우지 못한 근무시간은 지자체별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월평균 4~8시간 내외의 종이접기, 독서지도, 동요배우기 등의 교육을 개설하여 의무 수강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돌보미의 이직율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신규양성이 줄어들어 양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상대적으로 거리간 먼 이용자에게도 아이돌보미가 연계에 응하게 되어 연계율이 높아지게 되어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2. 휴게시간 및 주52시간 근무 관련

### 1) 피치못하게 휴게시간을 주지 못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케 법 개정

현실에서는 아이돌보미는 모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아이의 안전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한들, 기존의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독립된 휴게공간의 제공이 어렵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업무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여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받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아이돌보미는 30분이나 1시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하루 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회~6회의 노동을 하고 4회에서 7회의 이동을 해야 하므로 3시간을 유급노동을 하였지만 중간의 이동과 대기시간이 추가되어 실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되며, 교통비 또한 통상의 아이돌보미는 2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3회 내지 6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급노동시간과 부담된 교통비를 제하면 실질임금이 통상의 노동자의 50%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체인력으로 일하려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조항 자체의 개정은 없었으나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 2018.7.1.] [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에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였고,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2018. 7. 1.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①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은 2019. 7. 1.부터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휴일을 포함한 7일(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며(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및 고용부장관의 인가 등으로 인한 예외 적용 가능) ② “사회복지사업”의 휴게시간은 2018. 7. 1.부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

#### **사례1. 대법원 판례 선고 2013다 60807판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 구체적인 업무방식,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

#### **사례2. 대법원 선고 2014다74254판결**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및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이 쟁점이 된 판결

#### **사례3. 대법원 2017.12.13. 선고2016다243078 임금**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판결)가 쟁점이 된 판례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1명만이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을 하였고, 91명이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휴게시간장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92명 전원이 휴게장소를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독립된 휴게공간의 제공과 대체인력의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93.5%인 86명의 아이돌보미가 기존처럼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대신에 휴게시간분에 해당하는 시간의 노동에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선택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을 한 아이돌보미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1명이 기타를 선택하였으나 이유를 표기하지 않았으며, 5명이 무응답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인 아이돌봄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기존의 돌봄 노동자에게 휴게장소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돌봄노동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이 하락이 발생하고,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에게는 감정노동의 유형이기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가 상실되어 돌봄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이 휴게시간분의 두배 정도에 해당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관련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사실상 대체인력의 투입은 불가능하며, 돌봄영역의 노동자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않아도 되게 법을 개정하는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휴게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의 개악이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에서 ‘영유아, 환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가사근로자가 돌봄 대상자로 부터 분리되어 온전한 의미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돌봄대상자의 안전 또는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유연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법률안에서 밝힌 가사노동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처럼 휴게시간의 부여가 곤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노동을 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의 근로와 야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것처럼 가산수당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 2) 주52시간 근무 제한 관련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아이돌보미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불안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이돌보미가 둘로 늘어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와 관련된 조사와 올바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주52시간이상 노동을 시킬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 300인미만의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 까지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를 빌미로 새해벽두부터 주52시간이 아닌 40시간 미만의 일만 주어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시간당 이용료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센타에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사와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3. 노동3권 근로시간면제 예산 편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1항에서 노동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아이돌보미는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에 교섭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의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성가족부와 광역지자체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 센타는 광역지자체의 승인이나 센타가 근로시간면제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이 가능하다는 여가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면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의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광역지자체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 시달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시간 면제를 위한 정부의 추가금액 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 여건과 유사사례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 광역지자체의 책임떠넘기기로 인해 유독 아이돌보미가 가입한 노동조합만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하루 빨리 여성가족부가 입장을 바꾸어 아이돌보미가 노조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업무메뉴얼과 사업안내서 상의 여러 가지 문제

노무업무메뉴얼과 사업안내서상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2013년 교통비 지급기준의 불이익 변경, 2019년 경력지원금 전액삭감<sup>1)</sup>의 불이익 변경, 토요일 근무시 시간외수당 미적용 불이익 변경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존중하지 않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단시간 기간제이기에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변경된 계약서에 동의 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아이돌보미들의 가슴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었다.

또한 아이돌봄사업의 연계의 공정성을 위해 연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이 전혀 담겨지지 않은 것 또한 문제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 1) 주휴수당 계산의 위법성 등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유급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여가부의 노무 매뉴얼은 유급주휴일 적용 여부를 특정 유급주휴일로부터 4주간을 역산하여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하라는 것으로서 법정 산정기간에 맞는 내용이나, 미리 근무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주휴일 지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설과 추석 등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66시간을 채우기 어려운 아이돌보미의 현실을 고려하여 국공휴일의 경우 주휴일을 계산할 때 일평균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공휴일로 인한 주휴수당 미발생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2) 시간외수당 계산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별표 판단기준에서 2의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1) 경력지원금 대신에 명절상여금을 신설했다고는 하지만 지급기준의 다름과 지급금액이 경력지원금은 연간 120만원, 명절상여금은 연간 80만원으로 사실상 40만원이 삭감되었다.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 2명 이상의 아이를 볼 때 지급되는 가산수당은 담당업무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 3)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있으며, 제4항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있다.

도한 2018년 6월 22일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과 관련된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에서는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미사용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니 지급할수 없다고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연차휴가일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법원의 판결에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9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의 계산은 2019년 1월1일에 입사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

### 4) 기타문제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매년 계약 시 건강진단서(결핵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결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건강진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여 문제가 있다.

##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적용 방안 등 서비스개선방안

이재춘 (서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동대문구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춘 입니다.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아 종일제 돌보미는 8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 휴게시간 적용방안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은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영아기는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 시기라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에는 일정한 양육자가 일관되게 양육을 하여야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휴게시간을 확보하려고 대체 돌보미 파견은 아이와 부모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친 인척이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이 전무하다고 보아야합니다. 가능하면 돌봄을 신청하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정은 휴게시간 부여가 부담이 되고, 그렇다보니 이용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게 됩니다.

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영아들이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돌보미로서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돌보미의 특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경우 그에 알맞은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비스개선방안**

2017년 여가부 자료에 의하면

60시간이하 월 평균 근로시간 35.86시간 (31.6%)

61시간이상174 시간 이하 105.76시간 (56.5%)

175시간 이상 210.74 (11.9%)

전체 아이돌보미 68.4% 월평균 60시간 이상

월평균 96.18근로시간

2017년 기준 61시간\_174시간 평균 92만 1천원

아이돌보미가 고용안정성 및 일정한 소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당 등 제 수당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취약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 수요를 충족함**

취약가족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거나 이른 아침 밤늦은 시간대에 근로를 할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 이용시간외에 충분한 돌봄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 현행보다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월 이용시간 한도 및 지원 확대, 자부담 수준 낮춤)

취약가족의 자녀들이 따뜻한 돌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저출산 대응 보편적 돌봄서비스로서 돌봄지원**

- 자녀 돌봄 공백 지원. 즉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 기관보육의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 이용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설계. 자부담 수준 차등 적용
- 라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자부담 80%로 조정

**\* 돌보미 자격증 제도 도입 및 관리체계 필요**

-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 도입
- 보수교육 질적 수준 제고
- 고용안정성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현실과 고민

최민영 (대구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I. 들어가며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안된 아이돌봄서비스는 2006년 시범사업 이후 보육(교육)기관이 이용자 가정이 원하는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과 더불어 자녀를 장시간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 특히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편·변화하면서 틈새보육에서 중요한 정부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센터장으로 지난 13년간의 아이돌봄사업의 변화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변화는 2013년 아이돌보미 4대보험 가입과 이를 계기로 한 14년 체불임금 소송이며, 이를 시작으로 한 2107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2018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근로자성 인정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아이돌봄고유사업 수행보다는 소송과 단체교섭 등의 노무업무와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 등의 부과업무가 더 과중된 작금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전국 사업수행기관 모두의 동일한 상황이다.
- 이에 본 토론은 주제발표원고를 근거로 사업수행기관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돌봄사업의 운영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현실

#### 1. 수요파악의 어려움

- 아이돌봄관련 국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음
- 심지어 2015년의 경우 예산이 삭감된 적도 있어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보다는 편성된 예산에 맞춘 사업진행이라는 느낌이 강함



-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 내 서비스 수요파악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증액한 만큼 이용자 가구 수가 증가하지 못함

〈표 1〉 아이돌봄사업 국비예산 및 이용자 가구 증가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금액	40,189	43,464	70,818	79,174	78,716	82,816	87,899	108,377
	증가율	-	8.1%	62.9%	11.8%	-0.6%	5.2%	6.1%	23.3%
이용자	가구수	39,138	43,947	51,393	54,362	57,687	61,221	63,546	64,591
	증가율	-	12.3%	16.9%	5.8%	6.1%	6.1%	3.8%	1.6%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 2. 갑작스럽게 시작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 2019년 아이돌봄사업에서 적용된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논의는 여성가족부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작.
  - 2013년 9월부터 아이돌보미 4대보험가입과 퇴직금 적립이 시작되면서 아이돌보미의 근로 기준법상 노동자성에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4년 말 광주에서부터 시작한 체불임금 진정이 대구, 경기,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
  - 광주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단체교섭이 진행 중.
- 2017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2018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업수행기관은 4차에 걸친 소송에 참여 중.
- 전국 222개소 서비스제공기관 중 대다수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 및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임.
- 이들 사회복지법인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조직으로서 보편적 복지차원의 가족복지실현을 위해 센터를 위탁받고 있으며, 별다른 노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비전문적인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진정과 소송, 단체교섭 등 노조문제는 사업운영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존재함.

〈표 2〉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정 이후 소송 현황

일시	사건번호	원고	피고
2018.02.19	2018가합509326	권현숙 외 1,329명	대한민국 외 82명
2018.05.09	2018가합531101	박옥순 외 380명	대한민국 외 80명
2018.10.08	2018가합570793	이숙여 외 586명	대한민국 외 103명
2019.01.09	2019가합41704	강성자 외 278명	대한민국 외 74명

〈표 3〉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구분

구분	사용자 사유
센터 / 수행기관	- 근로계약의 당사자 - 업무내용, 장소 등을 결정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함 - 민원에 따른 아이돌보미 교체 등 결정
지자체	- 보조금의 30% 지급 -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관리 - 아이돌봄자격정지 및 취소 권한
정부	- 사업안내 재정 - 보조금의 70% 지급 - 서비스제공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 특히 2019년부터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이 부여된 사업적용은 현장에 적응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휴게시간의 경우 센터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연계자체가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임.
- 근로자성 부여 이후 기존과 달리 근로수당과 법정수당을 분리·지급해야함으로 센터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현재 아이돌봄 수행인력은 연계인력만 있으며, 행정인력은 없음. 단, 2019년부터 200명 이상의 아이돌보미가 근무하는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노무전담인력을 배치하였으나 200명 미만의 기관의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
- 더불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각각의 민원폭주로 고유업무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표 4〉 사업수행기관에서의 휴게시간 보장방법

구분	4시간 연계의 경우 휴게시간 보장방법	비고
1	· 부양육자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문제없으나 연계의 어려움
2	·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는 이용자 가정에만 파견한다.	
3	· 2시간씩 각 각의 돌보미를 파견한다.	
4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연계시간을 조정한다. - 3시간 30분 연계 / 2시간, 2시간씩 분리 연계	연계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근로기준법 준수에는 어려움
5	· 휴게시간은 이용자가정과 아이돌보미간 협의로 결정한다. - 지침상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사업수행기관 2차 협의	

### 3. 아이돌봄 추진체계상의 기관들의 역할 한계

○ 아이돌봄사업의 추진체계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광역거점기관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분되었으나 각각의 사업영역에서의 한계점이 분명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아이돌봄업무를 3개 본부로 나누어 편제



(가족서비스지원본부, 노무관리지원부, 교육컨설팅단)함. 이에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업무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광역거점기관은 각각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광역업무담당, 교육관리담당, 모티터링담당으로 최소인력으로 배치되어 있어 설치목적인 관할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조정,사업실적 관리까지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음.
- 서비스제공기관은 2018년 대비 새롭게 생겨난 노무업무, 행정업무, 민원폭주 등등으로 업무가중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아이돌보미의 명절수당 반영 등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임.

〈표 5〉 아이돌봄추진체계상 기관의 목적과 현실적 한계점

구분	목적	한계점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지원</li> <li>- 양성·보수교육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li> <li>-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담당자 교육 등 업무지원</li> <li>-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실무지원 및 현장방문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에는 한계</li> </ul>
광역 거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지원 및 관할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조정,사업실적 관리</li> <li>· 서비스 이용자 전화모니터링, 아이돌보미 활동현장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등 아이돌봄서비스 사후관리</li> <li>· 아이돌보미 교육관리·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지역 내 서비스 수요파악 불가</li> </ul>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 교육, 파견,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 및 서비스 연계 관리, 안전사고 관리 만족도 조사, 실적작성·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업무 가중</li> <li>· 아이돌봄 담당직원의 처우문제 발생</li> <li>· 기존센터에서 업무수행 한계점 발생</li> </ul>

### Ⅲ. 개선방안 논의

- 아이돌봄사업은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박사의 개선방안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대응 보편적 돌봄서비스로서의 재가자녀돌봄지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하기에 우선적으로 현재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수행인력문제

- 아이돌보미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

- 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 휴게시간은 답 없는 문제이다.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하자니 법상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모양새가 되며,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이용가정에 대체돌보미를 보내자하니 30분을 위해 활동할 아이돌보미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다들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많은 센터장들이 이 문제는 다시 특례적으로 포함시키거나 보육교사처럼 대체돌보미를 채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들 하고 있다.
- 현재 각 센터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든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아이돌보미 근태관리 강화 및 정년확정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지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다시 활동이 가능한 상황임.

- 자격취소기준 강화(금고형<sup>1)</sup> 이상이 아닌 벌금형 혹은 자격정지로 변경요청)

○ 아이돌봄사업 수행인력의 업무과중 및 처우문제 해결

- 현재 수행인력은 아이돌보미 50명 당 1명의 구조<sup>2)</sup>로 모두 연계인력이지만 회계 및 노무에 대한 인력은 아님.
- 현행인력으로는 2018년 대비 늘어난 노무업무<sup>3)</sup>(200명 미만의 경우 노무전담인력 미배치), 연계업무, 민원업무, 행정업무 등을 대응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기존 50명당 1명의 수행인력 배치기준 변경 필요
- 2019년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상당 수준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명절수당도 지급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타 업무종사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실무담당자에게 역차별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1)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다.

2) 지침상 월별 활동돌보미 50명당 종사자 1명을 권장(예시 : 50명까지 1명, 51명부터 2명)

3)

인원	사업주 의무사항	관련 법령
5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제28조)	장애인고용법
100인 이상	장애인 미채용시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제33조)	장애인고용법
15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사용자부담 증가(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00인 이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제1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제13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공지(제20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제12조)	고령자고용법
500인 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제21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제17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 2. 전달체계상 문제해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할 수있도록 개편이 필요함.(2019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돌봄사업부업무가 지역서비스지원부, 노무관리지원부, 교육컨설팅단으로 분리되었음)
- 광역거점기관이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 분석·조정, 사업실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이 필요함.
- 현재 아이돌봄사업이 가진 사업의 중요도, 예산 및 인력의 구조 등은 기존센터에 병행·설치 되기에는 한계점 발생. 별도 ‘아이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표 6〉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사업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852,033	931,643	1,066,328	1,441,635	2,507,000

〈표 7〉 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구성현황

구분	아돌직원(176명)		아돌제외 직원(52명)	
	직원	아이돌보미	직원	다문화 특성화
인원	5	171	16	36

## 3. 운영구조의 문제점 해결

- 사용자성의 명확한 구분 필요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운영비지원방식의 사회서비스로 변화를 통한 센터 자율성 보장
-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 아이돌봄지원사업 특성을 고려한 관련법 개정







